

주요

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

산업안전보건법



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

-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·승인(제14조)
-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(제15~19조)
- 산업안전보건위원회(제24조)



노동자 보호조치

- 안전보건교육(제29조, 제77조)
- 고액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(제41조)
-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(제129조, 제130조)
- 작업환경측정(제125조)



산재발생 시 조치 사항

-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및 대피, 지체 없이 보고(제54조)
-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(제57조)



산업재해 및 위험상황이
발생한 경우

회사명

안전보건관리책임자

성명

에게 연락바랍니다.

연락처

